[서 류 제 출 대 상 자 안 내 문]

-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서는 10월 5일~10월 12일까지(우체국 발신소인기준) 신청서 작성 내용 확인을 위해 지정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우리 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제출서류 확인 후 점수 서열에 의해 결정되며 동점일 경우 전산추첨에 의합니다. * 사정에 의해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자 소진으로 공가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당첨일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 (발표: 2020년 12월 28일 오후4시 이후 LH청약센터 또는, ARS 1661-7700로 1개월간 확인) ※ 동명이인이 있으니 접수번호 확인이 안되시는 분은 ARS 1661-7700로 확인바람
-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유선 확인이 불가하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 서류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인터넷접수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자도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 보내실곳 : **우)17006**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용인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모집담당 앞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 9. 7.)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일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제출서류 (모든 신청자는 공통 서류를 다 발급·제출하여야 하며, 한가지라도 빠뜨리면 검토 불가)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
1.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사본(앞면)	-	
2. 인감증명서	• 반드시 본인 발급분으로 제출(대리 발급분 불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가능	주민센터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B자 제공동의서 4. 금융정보등	• (동의방법) 첨부양식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정자로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1117174	
(금융·신용·보험정 보) 제공동의서	• 금융성보동의서 서명 날인란(2곳) 만드시 성명을 성자로 기입	LH지정 서식에 신청자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mark>임대차계약서 사본</mark>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LH거주" 기재하고 계약서사본 제출 생략)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작성	
6. 주민등록표 등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세 대구성원과 세 대주와의 관계, 세 대구성원의 전 입일/변동일 사유, 세 대구성 사유, 세 대주 및 세 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 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 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 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가점 대성자는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관계,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5년이상)사항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 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1부
7.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관계,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5년이상)사항 포함 발급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단호, 세대주 및 관계, 신청사의 과거 주소면봉(5년이상)사항 포함 열급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 센터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주민센터 공사양식	1통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 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1통
장애인복지카드사본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m²초과 50m²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1통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뒷면포함)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사외취약계층 입증서류 (애당사만 세울)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사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 목에 해당하는 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 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 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 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 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서, 아동복지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사람(「국민기초생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 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에 거	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붙임2 예비신혼부부용 세대구성확인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데 있	어 이) 단지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 • 연락 □ (2) 「 • 성명	: 등록('처 : 대표신 :	상주소 : 년호 :
• 연락 구분	처 : 동의	동의내역
개정 금융보		상기 (1), (2)인은 ()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상기 (1), (2)인은 ()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신청시와 동일인이 아닐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단지 국민	<u>l</u> 임대주택에	예비신혼	부부 자격	ᅾ으로	신청	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	지 아래와 깉	이 세대를	를 구성할 것	선이며,	혼인	으로	구
성된	세대를 확인하	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체	다계약이 무효기	처리 될 수	- 있음을 확인	미하였습니	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세대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신청인 세대와 배우자 세대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Italiatat 1 B. 1-2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배우자 (필수기재)		-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		
		_		
		-		

년 월 일

대표신청인: (인)

예비배우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작성 시 오류가 많습니다. 정확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산스캔용)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로 **점선 안에 정자로** 기입,
 -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서명 날인이 아닌 성명을 정자로 점선 넘지 않도록 기입

- 신청자는 1.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2곳 기재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
 - 추가 세대워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 시 선명한펜 사용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 해당사항이 없어도 아니오 체크 및 서명 후 반드시 제출
- 부채란은 금융부채가 아닌 본인이 임대인으로서(상가, 오피스텔, 주택-주택관정 제외된경우 소유 경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신 청 자 명 :			전화번호 :
신청 단지명 :	[신청형:	m²]	인터넷접수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 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 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V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 <mark>정도</mark> 등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 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 런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 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 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 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u>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u> 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서,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u>,</u>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유편사나를 통한 암屆 교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암1륜 부과내역 압주자격 검증내역 등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u>본인의 민감정보(장</u>애유형, 장애<mark>정도</mark>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7. **[선택]** 본인은 <u>입주자모집</u> <u>알림</u>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u>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u>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 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 2항 및 제18조제 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 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권주거복지지사장 귀하

	메비입수사 중복신성 물가사앙 확인서									
확인자 (신청	성명			생	년월일					
인)	주소									
본인	인(배스	우자	포함)은	202	0년	09월	07	일	공고	
		단지	_(예비)입	주자로	공급을	을 신청	성함에	있어	<u>해당</u>	
<u>단지</u>	예비	입주자로	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선정되	티어 있	<u> </u>	<u> 등일한</u>	
<u>주택</u> 유	구형(-	국민·영구	·행복주택) 단지	예비일	일주자	로서의	지위	<u>는 자</u>	
<u>동</u> 탈	락 처	리됨을	충분히 인	<u> </u>	1 신청 혐	함을 획	·인합L	l다.		
※ 참	고사힝	t								
공-	고일이		선정됨의 기 우 <u>②청약 집</u>	-						
					2020년		월		일	
확 인 (신청	-			()	서명 또는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청	성 명			생년월일			
신 인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 (신청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원	[임차인]		
				원	[임차인]		
		예 □ 아니오 □	분양권의 수분양자인 경우(계약금만 납부한 경우도 해당)				
기타 자산	분양권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ul 사고나즈 시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비상장주식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예 □ 아니오 □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경우 (신청자가 전·월세 보 증금을 받은 경우)				
부채	임대보증금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임대보증금(신청자가 소유주인 경우):주택,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2020 년 월	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 주택법 제106조(과대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시청자	이전시히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성명)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 실을 동의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함 ²⁾ (성명)
본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 ·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